

과천도시공사 직원 직무발명 보상규정

제정 2019.12.31. 규정 제22호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발명진흥법」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과천도시공사 이하 “공사” 라 한다)에 소속하는 직원의 직무발명의 처분·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,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켜 공사와 과천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발명” 이라 함은 「특허법」, 「실용신안법」 또는 「디자인법」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,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.
2. “발명자” 라 함은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을 한 직원을 말한다.
3. “직무발명” 이라 함은 공사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공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경위가 직원의 과거 또는 현재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.
4. “자유발명” 이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발명이외의 직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.
5. “공사소유 특허권” 이라 함은 이 규정에 따라 공사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 등의 권리를 말한다. 「실용신안법」, 「디자인법」에 따른 경우도 이와 같다.
6. “처분” 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 - 가. 공사소유특허권 및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
 - 나. 공사소유 특허권에 대한 「특허법」 제100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실시권(專用實施權)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의 규정에 따른 통상실시권(通常實施權)의 허락
 - 다.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

제2장 특허 등의 등록·승계·출원 등

제3조(특허 등의 업무) 과천시도시공사사장(이하 “사장” 이라 한다)은 직무발명 및 공사소유 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

1. 직무발명의 승계
2.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계되는 직무발명의 국내·외 특허출원
3.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·관리

제4조(직무발명의 공사승계) ① 공사는 「발명진흥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라 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(이하 “공사승계”라 한다)한다. 다만, 분쟁중이거나 공사승계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발명한 것인 경우 공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.

제5조(발명의 신고) 직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직무발명의 승계결정) ①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사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공사가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며, 그 결과를 해당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사장으로부터 승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공사에 양도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계결정은 과천시도시공사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에 따라야 한다.

제7조(특허 등 출원) ① 사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공사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.

②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 등을 출원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조(발명자의 출원) ① 발명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승계를 받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

등의 출원을 할 수 없다. 다만, 해당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을 한 경우에도 제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특허권의 등록) ① 사장은 특허 등의 권리를 공사승계하거나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이 특허 결정된 때에는 공사 관련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공사 명의로 특허 등록을 하여야 한다.

② 공사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.

제10조(특허등록 통지) 사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명의로 등록을 마친 후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1조(처분의 방법 등) ① 공사소유특허권의 처분 및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 전에 처분할 경우에는 「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·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」 제10조 부터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.

②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29조제1항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
1. 지방자치단체·공법인·공익법인(공기업법에서 정하는 지방공사 포함)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
2.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양어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하는 때
3.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한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당해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

③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38조제1항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
1.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법에서 정하는 지방공사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
2. 공사가 취급하던 업무를 당해 공사 외의 자에게 포괄하여 이관하는 경우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되고 있던 재산을 이관 받는 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때
3.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양어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

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때. 다만, 전용실시권 설정 신청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3장 직무발명보상 등 심의위원회

제12조(설치 및 구성) ① 사장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등록, 보상 및 처분 등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상임이사(본부장), 부위원장은 관련부서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위원은 직무발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다.

제13조(기능)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의 공사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
2. 공사승계가 결정된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에 대한 처분 및 보상에 관한 사항
3. 소속 직원의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4조(회의 등) ① 위원장은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,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사무관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업무담당 직원이 된다.

⑤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5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사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6조(심의요청) ① 사장은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발명자로부터 신고가 있거나 특허가 출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

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사장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3

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7조(등록보상금) ① 사장은 공사승계가 결정된 공사소유 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아래의 금액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1. 특허권 : 50만원
2. 실용신안권 : 30만원
3. 디자인권 : 20만원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.

제18조(특허권의 처분 보상금) ① 사장은 공사소유 특허권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② 사장은 공사소유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제19조(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) 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1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은 전액 지급한다.

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.

제20조(보상금 등의 반환)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가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「특허법」 제1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21조(자유발명의 승계)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권리 또는 특허권을 공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규정에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.

②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및 관리하여야 한다.

제22조(발명자의 의무 등) ①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등록, 처분, 실시 등에 있어 공사 또는 허가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협력할 의무가 있다.

②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해당 직무발명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23조(직무발명의 상황보고) 사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여부 및 그 내용, 그 밖에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24조(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)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대하여 이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·관리한다.

제25조(시행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사 설립일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